

202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합 계		40개	1,757명		
소 계		4개	206명		
제1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7급	수의 (일반)	수의 (일반)	31	충청남도 13,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2,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1, 당진시 2, 부여군 1, 청양군 1, 흥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2
			수의 (장애인)	1	충청남도 1
	8급	간호	간호	63	천안시 6, 공주시 4, 보령시 8, 서산시 7, 계룡시 3, 당진시 6, 금산군 6, 부여군 1, 서천군 6, 흥성군 8, 예산군 6, 태안군 2
	9급	시설	일반토목	86	충청남도 7, 천안시 2, 보령시 5, 아산시 16, 서산시 10, 논산시 6, 계룡시 4, 당진시 7, 금산군 2, 부여군 12, 서천군 2, 청양군 3, 흥성군 4, 예산군 3, 태안군 3
			건축	25	충청남도 2, 보령시 3, 아산시 4, 논산시 3, 당진시 4, 금산군 2, 부여군 3, 서천군 1, 흥성군 2, 태안군 1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소 계		26개	1,441명	
	8급	간호	간호	59	천안시 2, 보령시 5, 아산시 6, 서산시 2, 논산시 6, 금산군 5, 부여군 10, 서천군 1, 청양군 5, 흥성군 4, 예산군 7, 태안군 6
		보건진료	보건진료	18	공주시 1, 아산시 7, 당진시 1, 금산군 1, 서천군 3, 흥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1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455	충청남도 30, 천안시 22, 공주시 33, 보령시 35, 아산시 66, 서산시 55, 논산시 9, 계룡시 9, 당진시 30, 금산군 24, 부여군 32, 서천군 21, 청양군 10, 흥성군 25, 예산군 12, 태안군 32
					충청남도의회 2, 보령시의회 2, 서산시의회 1, 당진시의회 2, 청양군의회 2, 태안군의회 1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9급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84	충청남도 3, 천안시 1, 공주시 5, 보령시 5, 아산시 15, 서산시 10, 논산시 4, 계룡시 2, 당진시 8, 금산군 4, 부여군 4, 서천군 5, 청양군 2, 홍성군 6, 예산군 2, 태안군 8
			일반행정 (저소득층)	28	충청남도 2, 천안시 1,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3, 서산시 1, 논산시 2, 계룡시 1,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2, 서천군 1, 청양군 1, 홍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2
		세무	지방세 (일반)	29	천안시 2, 공주시 2, 아산시 3, 서산시 1, 논산시 6, 당진시 2, 금산군 3, 부여군 2, 청양군 2, 홍성군 1, 예산군 3, 태안군 2
			지방세 (장애인)	4	논산시 2, 금산군 1, 청양군 1
			지방세 (저소득층)	1	서산시 1
		전산	전산 (일반)	16	충청남도 4, 천안시 1, 공주시 2, 보령시 1, 아산시 2, 서산시 1, 당진시 1, 금산군 2, 부여군 1, 청양군 1
			전산 (장애인)	1	당진시 1
			데이터	3	충청남도 1, 보령시 1, 홍성군 1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226	천안시 27, 공주시 22, 보령시 10, 아산시 25, 서산시 15, 논산시 24, 계룡시 4, 당진시 14, 금산군 15, 부여군 4, 서천군 9, 청양군 5, 홍성군 16, 예산군 19, 태안군 17
			사회복지 (장애인)	19	천안시 2, 공주시 3, 아산시 3, 서산시 1, 계룡시 1, 금산군 3, 부여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사회복지 (저소득층)	7	천안시 1, 공주시 1, 아산시 1, 서산시 1, 홍성군 2, 예산군 1
		사서	사서 (일반)	18	충청남도 2, 천안시 2, 공주시 4, 서산시 1, 논산시 1, 계룡시 1, 금산군 1, 홍성군 2, 태안군 4
			사서 (장애인)	4	충청남도 1, 천안시 1, 공주시 1, 금산군 1
		공업	일반기계	19	천안시 1,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2, 계룡시 1,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3, 홍성군 2, 예산군 1
			일반전기 (일반)	26	충청남도 4,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2, 서산시 1, 논산시 4, 당진시 1, 부여군 2, 서천군 2, 청양군 1, 홍성군 3, 태안군 1
			일반전기 (장애인)	3	충청남도 1, 논산시 2
			일반화공	4	천안시 1, 서산시 1, 부여군 1, 홍성군 1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9급	농업	일반농업 (일반)	48	충청남도 2, 천안시 6, 공주시 4, 보령시 4, 아산시 6, 서산시 1, 논산시 2,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7, 서천군 2, 청양군 2, 홍성군 5, 예산군 2, 태안군 1
			일반농업 (장애인)	5	충청남도 1, 논산시 1, 금산군 2, 청양군 1
			일반농업 (저소득층)	2	금산군 1, 부여군 1
		축산			
			축산	18	충청남도 2, 천안시 1, 공주시 2, 보령시 4, 아산시 1, 서산시 1, 논산시 1, 계룡시 1, 당진시 1, 청양군 1, 홍성군 2, 예산군 1
		녹지	산림자원 (일반)	39	충청남도 4, 천안시 3, 공주시 5, 보령시 2, 아산시 4, 서산시 4, 논산시 2, 계룡시 2, 금산군 2, 부여군 2, 서천군 1, 청양군 1, 홍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4
			산림자원 (장애인)	1	충청남도 1
			조경	8	아산시 3, 당진시 3, 부여군 2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	9	충청남도 2, 보령시 2, 당진시 1, 홍성군 1, 태안군 3
			일반수산 (장애인)	1	충청남도 1
			선박항해	4	서천군 2, 홍성군 1, 태안군 1
		보건	보건 (일반)	33	충청남도 2, 천안시 3, 공주시 3, 보령시 2, 서산시 4, 논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4, 금산군 2, 부여군 1, 서천군 2,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2
			보건 (장애인)	7	충청남도 1, 공주시 1, 논산시 1, 금산군 2, 홍성군 2
		식품위생	식품위생 (일반)	4	충청남도 1, 서산시 1, 논산시 2
			식품위생 (장애인)	2	충청남도 1, 논산시 1
		환경	일반환경 (일반)	45	충청남도 2, 천안시 3, 공주시 4, 보령시 3, 아산시 5, 서산시 2, 논산시 5,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4, 서천군 1, 청양군 5,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3
			일반환경 (장애인)	1	충청남도 1
			일반환경 (저소득층)	1	논산시 1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9급	시설	일반토목	86	충청남도 8, 천안시 5, 공주시 6, 보령시 3, 아산시 19, 서산시 4, 논산시 6, 계룡시 1, 당진시 4, 금산군 3, 서천군 2, 청양군 8, 홍성군 10, 예산군 4, 태안군 3
			건축 (일반)	29	충청남도 2, 천안시 1,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4, 논산시 3, 당진시 3, 금산군 3, 서천군 1, 홍성군 6, 태안군 1
			건축 (장애인)	1	충청남도 1
			지적 (일반)	21	충청남도 5, 보령시 2, 아산시 2, 서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1, 금산군 1, 부여군 2, 청양군 2, 홍성군 2
			지적 (장애인)	1	충청남도 1
		방송통신	방재안전	30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3, 아산시 2, 서산시 3, 논산시 4, 계룡시 1, 당진시 3, 금산군 1, 부여군 3, 청양군 2, 홍성군 2, 예산군 3, 태안군 1
			통신기술 (일반)	18	충청남도 5, 천안시 1, 공주시 2, 보령시 2, 아산시 2, 서산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청양군 2
			통신기술 (장애인)	1	아산시의회 1
			시설관리	2	충청남도 1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소 계	2개	25명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3	공주시 1, 금산군 1, 서천군 1
			의료기술 (방사선)	3	계룡시 1, 청양군 1, 태안군 1
			의료기술 (물리치료)	2	아산시 2
		운전	의료기술 (치과유생)	8	보령시 2, 서산시 1, 논산시 1, 당진시 1, 홍성군 3
			운전	9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4, 서산시 1, 태안군 1
					보령시의회 1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소 계	1개	3명		
	7급	행정	일반행정	3	충청남도 3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연구사	소 계		15개	82명
		학예연구	학예일반	2	충청남도 1, 공주시 1
		농업연구	원예	1	부여군 1
		수의 (일반)	수의 (일반)	2	충청남도 2
			수의 (장애인)	1	충청남도 1
		보건연구	공중보건 (일반)	5	충청남도 5
			공중보건 (장애인)	1	충청남도 1
		환경연구	환경 (일반)	2	충청남도 2
			환경 (장애인)	1	충청남도 1
		지도사	작물	33	공주시 1, 보령시 3, 아산시 2, 서산시 1, 논산시 6, 당진시 4, 금산군 1, 부여군 7, 서천군 2, 청양군 2, 예산군 2, 태안군 2
			원예	3	서산시 1, 흥성군 1, 태안군 1
			농촌생활	2	서산시 1, 흥성군 1
	9급	공업	기계운전 (굴삭기)	3	아산시 1, 금산군 2
			일반전기	2	보령시 2
	9급 (기술계고)	공업	일반기계	2	보령시 1, 당진시 1
			일반전기	4	보령시 1, 논산시 3
		농업	일반농업	2	보령시 2
		해양수산	선박기관	2	보령시 2
		시설	일반토목	9	천안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흥성군 3, 예산군 1, 태안군 2
			건축	5	보령시 1, 흥성군 2, 태안군 2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 자격요건에 따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기관으로 임용됨

나. 시험과목 ※ 파란색은 충청남도 자체출제 및 충청권 등 공동출제 과목으로 비공개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1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7급	수의	수의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8급	간호	간호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시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급	간호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데이터	국어, 영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선박항해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시설관리	국어, 한국사, 사회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	운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농업연구	원예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수의연구	수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역학, 생화학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지도사	농촌지도	작물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9급 (기술계고)	공업	기계운전 (굴삭기)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해양수산	일반농업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시설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일반토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예시)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6. 6. 20.인 경우, 2026. 4. 30. 현재가 기준이 됨
-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일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과 문제는 기술계고 출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문제와 동일하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9급 기술계고 전형 과목 : 2015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계설계' 과목은 '기계제도', '식용작물'은 '재배',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다. 시험문제의 출제

- 1)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시험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1회 임용 (간호, 시설)	0	해당 없음
제2회 임용 (8·9급)	38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기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보건행정,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3회 임용 (7급 행정, 연구사·지도사, 9급 기술계고 등)	18	국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제도, 생물, 재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정답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게시되며, 이의제기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가능

- 2) 충청남도 자체출제 및 충청권 등 공동출제 : 문제 비공개(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1회 임용 (간호, 시설)	8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제2회 임용 (8·9급)	19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항해, 선박운용,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국어(시설관리), 한국사(시설관리), 사회, 생물, 공중보건(의료기술), 의료관계법규,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3회 임용 (7급 행정, 연구사·지도사, 9급 기술계고 등)	24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보건학, 역학, 생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기계설계, 농업생산환경, 선박일반, 선박기관

- 자체출제 및 공동출제 과목은 비공개로, 이의제기는 별도 공고하는 기간에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2)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 3)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참고사항>

- 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②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③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④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⑤ 운전9급은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 시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운행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 구분	직급(직렬)	과목수	시험시간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행정)	5과목	10:00 ~ 11:40(100분)
	8·9급	5과목	10:00 ~ 11:50(110분)
	9급(시설관리)	3과목	10:00 ~ 11:00(60분)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3과목	10:00 ~ 11:00(60분)
	8급(간호), 9급(의료기술, 시설 등)	3과목	10:00 ~ 11:00(60분)
	9급(운전)	2과목	10:00 ~ 10:40(40분)

※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8·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 1.5배 시간연장(165분), 1.7배 시간연장(190분)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추가면접을 실시할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거주지 제한

1) 충청남도, 시군 및 지방의회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일(해당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별도 거주지 제한

직급·직렬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제한						
9급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제외]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천안시의회, 논산시의회, 서천군의회, 태안군의회	<p>▶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2)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해당 시군	<p>▶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거주지 제한</th></tr></thead><tbody><tr><td>충청남도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td><td>거주지 제한 없음</td></tr><tr><td>충청남도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td><td>충청남도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td></tr></tbody></table>	구분	거주지 제한	충청남도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거주지 제한 없음	충청남도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충청남도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구분	거주지 제한							
충청남도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거주지 제한 없음							
충청남도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충청남도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7급 수의, 수의연구직 9급 시설 (일반토목, 건축)	전체 임용예정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거주지 제한 없음</p>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 필요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 응시 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9.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자격 부여합니다.

라. 응시 자격요건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자격요건
제1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7급	수의	수의	▶ 수의사
				▶ 가정전문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보건진료소 포함)에 따른 의료기관 간호업무경력을 의미
	9급	시설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군복무(일반사병) 및 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군복무(일반사병) 및 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군복무(일반사병) 및 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 조산사, 간호사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급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9급	해양수산	▶ 1·2급 정사서, 준사서
				▶ 기술사 : 조선 ▶ 기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6급
				▶ 기술사 : 지적 / ▶ 기사 : 지적 / ▶ 산업기사 : 지적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자격요건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	▶ 방사선사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운전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 역사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보존과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연구	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석사 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수의연구	수의	▶ 수의사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환경연구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 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작물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원예	
			농촌생활	
	9급	공업	기계운전 (굴삭기)	▶ 굴삭기운전 기능사 ※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 (군복무(일반사병) 및 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기계운전 (기계)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계운전 (기계)	※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군복무(일반사병) 및 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기계운전 (기계)	▶ 무대조명전문인3급 이상
			기계운전 (기계)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자격요건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기술계고)	공업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 공업, 계량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일반농업	▶ 농업, 임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 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양수산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6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	일반토목	▶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축	▶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학력·경력 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2) 원서접수 시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3)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의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 대상 직류 >

- ▶ 제1회 임용시험 : 수의, 간호, 일반토목, 건축
- ▶ 제2회 임용시험 : 간호, 보건진료, 사회복지, 사서, 선박항해, 지적, 의료기술, 운전
- ▶ 제3회 임용시험 : 기계운전, 일반전기

- 4)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

- 5)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계통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6) 위 4), 5)에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서류제출일까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붙임3’ 참고)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도 관련 계통 또는 동일계통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에 따라 판단하며, 추천서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질의 및 서류전형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함

마. 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은 원서접수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충청남도 거주지요건을 충족하는 타 지역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9. 12. 31. 이전 출생자)로 제한
 -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2)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3)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은 2026. 6. 29.(월) ~ 7. 3.(금)**이며, 기간 내 학교에서 일괄 제출해야 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중퇴)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기타 성적,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계 고졸(예정)자 추천 시 유의사항(붙임4)’ 참고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4)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붙임1)를 참조하여 원서 접수 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 제한됨(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제1회 임용시험 : 2026. 2. 23.(월) ~ 2. 27.(금)
- ▶ 제2회 임용시험 : 2026. 3. 23.(월) ~ 3. 30.(월)
- ▶ 제3회 임용시험 : 2026. 7. 20.(월) ~ 7. 27.(월)

※ 제출기간 마지막날 소인분까지만 인정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구분모집 유의사항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접수하여 응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구분모집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수의·간호· 시설)	2. 23.(월) 09:00 ~ 2. 26.(목) 18:00	2. 23.(월) 09:00 ~ 2. 27.(금) 18:00	필기	3. 6.(금)	3. 14.(토)	3. 24.(화)
			면접	3. 24.(화)	4. 6.(월) ~ 4. 10.(금)	4. 28.(화)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제공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26. 2. 23.(월) ~ 2. 27.(금) [2. 27.(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제2회 임용시험 (8·9급)	3. 23.(월) 09:00 ~ 3. 27.(금) 18:00	3. 23.(월) 09:00 ~ 3. 30.(월) 18:00	필기	5. 29.(금)	6. 20.(토)	7. 14.(화)
		《4. 27.(월) 09:00 ~ 4. 29.(수) 18:00》	면접	7. 14.(화)	8. 4.(화) ~ 8. 13.(목)	8. 27.(목)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제공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26. 3. 23.(월) ~ 3. 30.(월) [3. 30.(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제3회 임용시험 (7급 행정, 연구·지도사, 9급 기술계고 등)	7. 20.(월) 09:00 ~ 7. 24.(금) 18:00	7. 20.(월) 09:00 ~ 7. 27.(월) 18:00	필기	9. 30.(수)	10. 31.(토)	11. 20.(금)
		《8. 26.(수) 09:00 ~ 8. 28.(금) 18:00》	면접	11. 20.(금)	12. 9.(수) ~ 12. 11.(금)	12. 22.(화)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제공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26. 7. 20.(월) ~ 7. 27.(월) [7. 27.(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8·9급 :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사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합니다.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란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를 의미

다. 응시원서 사진

-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지역(도, 시군, 지방의회)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전국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전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중복접수 불가
※ 다른 날짜에 시행하는 별도의 시험에는 중복접수 가능(예 : 1회 임용 / 2회 임용 중복접수 가능)
- 2)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 지방의회)별로 경쟁하여 선발
-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함('붙임1' 참조)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6)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사람에 대해 응시수수료 환불
- 7)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
- 8)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가산자격증 입력기간(필기시험일 포함 3일 이내)에 반드시 가산점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
- 9)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10)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함
- 11) 제3회 임용시험(7급 행정) 응시자는 선택과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 12) 제3회 임용시험(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는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학교에서 일괄 제출) : 2026. 6. 29.(월) ~ 7. 3.(금)
- 13)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일반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Level 2)	625점 이상
청각장애	-	350점 이상	204점 이상	-	375점 이상

- 1)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준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2) 2026년부터 TOEFL(IBT) 성적표 점수 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나, 기존 점수 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체계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5' 참고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2)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3)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능력 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해야 함

*** 추가등록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2)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1)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性)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2)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1)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취득하고, 가산점 등록기간(필기시험일 포함 3일 이내)에 지자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을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의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을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 의사상자 등 가산점 해당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1)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직렬(직류)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2) 기술직군(연구직·지도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면허증 안내(붙임2)’ 참조

※ 단,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가산점 미적용

마.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가산점 비율,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등을 본인이 확인하여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산특전 입력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가산특전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등록기간	등록시간	등록사항
제2회 임용시험	2026. 6. 20.(토) 09:00 ~ 2026. 6. 22.(월) 24: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증서) 번호 등
제3회 임용시험	2026. 10. 31.(토) 09:00 ~ 2026. 11. 2.(월) 24:00		

11.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가. 합격인원 : 선발예정 인원의 120%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으로 하며,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합니다.

나. 합격자 결정

- 1) 공개경쟁임용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2) 경력경쟁임용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 등에 기재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지원한 임용예정기관에 소재한 학교가 아닐 수 있으며, 원서접수인원 및 시험장 여건 등에 따라 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시군 소재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음에 유의

라.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 국가보훈등록증

※ 수정테이프 이외에 수정액, 수정스티커를 사용한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전산 기기(전자계산기 등)를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 통신기기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함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

사.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함

- 아.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자.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경임만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됨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전출제한 기간

- 3년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 5년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파.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안내-시험공고」에 공고되므로, 시험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

-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전화 문의
 - ☞ 시험 관련 사항 : 충남도청 인사담당관 고시팀(☎041-635-3533)
 - ☞ 원서접수 관련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의사상자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